

---

**2018년도**

**녹색자금 지원사업(공동체정원 조성) 공모**

---

**2018. 4. 5.**



**한국산림복지진흥원**  
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

# 「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(공동체정원 조성)」 공모

## I 공모 개요

### □ 공모 개괄

- 사업명 : 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(공동체정원 조성)
- 사업기간 : 2018년 6월 ~ 2018년 11월
- 총사업비 : 1,000백만원(녹색자금700백만원+자부담300백만원)
  - 시·도별 3개소 이내, 개소당 녹색자금 최고 175백만원 지원
  - ※ 개소당 적정 사업예산은 평균 250백만원(녹색자금 70%, 자부담 30%)
- 모집방식 : 지자체 공모

(단위 : 백만원)

공모사업	응모주체 (사업대상지)	총사업비		개소당 사업비
· 나눔숲 조성사업	-	1,000		
-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(총 사업비의 30%이상 자부담)	시·도 (국·공유지 <sup>1)</sup> )	녹색자금 700	자부담 300	녹색자금 최고 175 지원

※ 사업신청 응모자격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이며, 사업신청서를 시·도(응모주체)에서 자체심사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최종 사업제안서(총괄 사업제안서, 심사결과 순위목록, 개별 사업신청서)를 제출

### ○ 공모기간

-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: '18. 4. 5.(목)~4. 30.(월) 18:00 (26일간)

### ○ 공모방법

- 시·도에서 해당 관할 시·군·구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, 시·도별 3개소 이내 최종 사업제안서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마감시한 까지 공문 접수

※ 최종 사업제안서 서류 일체는 기관 이메일(greenfund@fowi.or.kr)로 함께 제출 요청

1) 토지소유주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사회복지시설법인으로 공공성이 영구 확보된 국·공유지에 한정함

## II 공모 계획

### □ 사업목적

- 녹색자금을 활용한 공동체정원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회복과 생활환경취약지역의 환경개선 추진
- 가든서포터즈<sup>2)</sup> 구성을 통한 시민정원사와 정원교육이수자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

### □ 사업내용

- 가든서포터즈를 조직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을 통해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
  - ※ 가든서포터즈를 구성 가능한 지자체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를 대상으로 함

### □ 사업대상

- (사업대상지) 사회복지시설, 생활환경 취약지로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나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국·공유지
  - ※ 「수목원·정원법」 제2조에 따라 문화재, 자연공원, 도시공원은 대상에서 제외
  -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마을공동체의 참여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
  - 도시재생,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단위 대상
- (대상지발굴) 공동체, 기업, 단체, 지자체 등 다양한 계통으로 발굴
  - 마을 등 지역공동체가 직접 발굴
  - 국·공유지 중 정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지자체가 발굴
  - 도시숲·공원 등 녹지공간과 산림을 녹색축으로 연결하는 장소 등

2) 가든서포터즈 : '시공사업자 1명 + 시민정원사·정원교육이수자 등 5명 내외'로 참여·구성한 협의체로서 공동체정원을 직접 지도하며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체를 칭함(별첨\_2참조 [‘2018년 「찾아가는 정원만들기」 추진계획(공동체 정원 조성 시범사업)]산림청\_2018.3.29.) / 추후 산림청에서 '가든서포터즈 구성 가이드라인' 안내공문 발송 예정

## □ 응모주체 : 시·도

- 사업신청서 작성 :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

## □ 응모방법

-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·도에 제출
- 시·도에서 사업신청서를 자체 심사한 후 3개소 이내 개별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
- 최종 사업제안서 및 붙임서류는 접수 마감시한 '18. 4. 30(월) 18시까지 공문 접수

※ 시·도에서는 최종 사업제안서 일체를 기관메일(greenfund@fowi.or.kr)로 함께 제출

## □ 지원조건 및 규모

지원조건	녹색자금 지원액	응모 개소수
총 사업비의 30%이상 자부담	개소당 최고 175백만원 지원	시·도별 3개소 이내

※ ① 녹색자금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70% 이하이며,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만약, 사업선정 후 '18년 8월 31일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됩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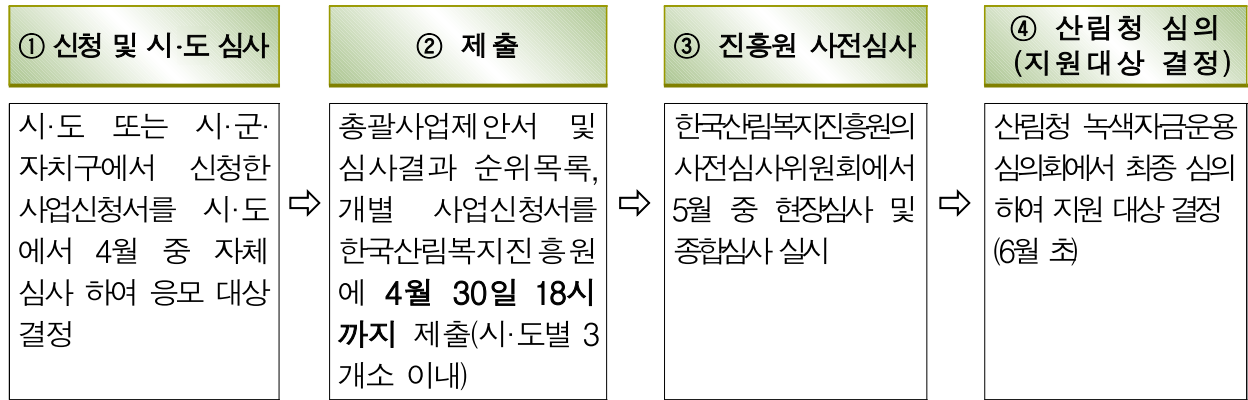
② 자부담에 경우 최초 사업신청기관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에서 전액 부담

③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(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)가 동일해야 합니다. 다만,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다른 지자체·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법인인 경우에는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(개인 소유 토지, 공공기관·사회복지시설법인이 아닌 타 법인 소유의 토지에는 사업시행 불가)

④ 사업명칭은 “○○(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명) ○○(지역명) 공동체정원 조성사업”으로 합니다.

※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'사업신청서'를 작성할 때 사업비 산출은 「별첨1. 사업비 편성 지침」의 <참고1>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사업비 산출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응모 및 선정 절차



## □ 심사기준

- 신청사업 기관 및 참여단체(가든서포터즈, 지역공동체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)의 사업실행 능력
- 정원조성 대상지의 여건이 사업선정 후 즉시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
- 사업대상지의 사용권리 확보 여부 및 접근성·개방성·이용성 여부
-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, 사후관리 계획의 지속성·구체성 등
-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(총괄) 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
- 지역의 공동체정원 특색을 살려 참신한 정원 아이디어 제안여부

## □ 선정제외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)
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(중복지원)
-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
- 각 개별법에서 토지용도가 제한 된 토지(예 : 농지법/전·답 등)
-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」 상에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
- 사업대상지에 각종 개발계획 등 타 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되어 있는 지역(5년 이내)

## □ 사업시행자

-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의 신청자 : 시·도지사

### Ⅲ 행정사항

#### □ 제출서류

- 최종 사업제안서 및 일체서류(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#### □ 선정결과 통보

- 2018년 6월 중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개별 통지(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#### □ 유의사항

- 사업제안서에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거나, 제안기관장 직인의 공문이 첨부되어야 유효합니다.
- 「녹색자금 관리규정」 제6조에 따라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 발주시 설계 및 시공사업은 분리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산림청 “2018년 공동체정원(찾아가는 정원만들기)추진계획”에 따라 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 중에 가든서포터즈 미참여 사항 적발 시 사업비(녹색자금)가 환수됩니다.
  - (설계용역) 가든서포터즈 구성없이 설계용역 추진 가능
  - (시공사업) 반드시 가든서포터즈를 구성한 사업체와 계약체결
  - (가든서포터즈) 시공사업자 1명 + 시민정원사·정원교육이수자 등 5명 내외
- 녹색자금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70% 이하이며,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0% 이상 이어야 합니다. (사업선정 후 18년 8월 31일까지 본예산에 자부담 30%이상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됨)
- 사업별 제안서 양식 및 증빙, 작성요령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관리실 042-719-4072~3

2018. 4. 5.

**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**